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0
----------	-------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 개정사항 반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9. 3. 28. ~ 4. 17. (제출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9.4.23.)

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세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1과 전창우
연 락 처	02-3153-8715